

예천군공무원노동조합 규약

제정 2018.10.23.

개정 2019.04.02.

개정 2021.11.26.

개정 2022.01.21.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노동조합(이하 “조합”)의 명칭은 예천군공무원노동조합이라 하고, 약칭은 “예천군공무원노조”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약은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의 업무능력향상, 근무환경개선 및 고충처리 등 복지증진과 사회적 지위향상, 군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의무를 다하며 나아가 군정 및 지역공동체 발전과 올바른 공직문화 정착, 공직자의 사회개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 조합의 사무소는 예천군청 내에 둔다.

제4조(법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사업) 본 조합의 제2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을 대의원회의 결 후 추진한다.

1. 불합리한 행정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조합원의 근무환경개선·업무능력 향상 및 후생복지 증진사업
3. 조합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4. 조직 강화 및 국내외의 단체와 연대를 위한 사업
5.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
6. 부정부패 추방 등 공직사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업
7. 건전하고 합리적인 노동문화 창출을 위한 사업
8. 조합원의 삶의 질 향상과 군민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제공을 위한 사업
9. 조합원 상호 상부상조를 위한 상조회 운영 및 교육

- 10. 예천군정 의지의 정당한 대외공표 활동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 11. 기타 조합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상급단체) ①조합의 상급단체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으로 한다.

②상급단체의 변경은 반드시 재적인원 3분의2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장 조합원

제7조(자격) ①예천군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은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단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가입이 허용되는 자에 한한다.

②조합원이 면직, 파면 또는 해임될 경우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입금지공무원 및 5급 이상 공무원, 청원경찰 등은 후원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가입 및 탈퇴) ①조합에 최초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1호 서식]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②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탈퇴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해야하며, 조합의 승인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징계절차가 끝난 이후에 탈퇴할 수 있다.

③조합에 탈퇴 후 재가입을 원할 시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에 따른 조합비는 탈퇴기간 중의 조합비와 탈퇴기간 미납 조합비의 20% 가산금을 완납하여야 한다.

제9조(자격의 상실) 다음의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퇴직·조합에서 제명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정해진 절차를 거쳐 조합을 탈퇴 한 경우
4.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인사발령 등으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제한사유에 따라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할 경우에는 후원조합원으로 자동 승계되며 그 사유가 상실될 시에는 조합원 자격을 회복한다.

제10조(권리)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징계를 받은 조합원에 대해서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1. 선거권과 피선거권
2. 발언권과 의결권
3. 조합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
4. 조합에 건의할 수 있는 권리
5. 기타 조합원으로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제11조(의무) 조합원은 다음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규약, 규정과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할 의무
2. 조합비를 기한 내에 납부할 의무
3. 조합의 사업과 활동에 참여하고 주요사항에 대해 보고할 의무
4. 조합 활동에 필요한 보안 및 기밀을 준수할 의무

제12조(조합원의 신분보장) 조합원이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하고, 조합 활동한 것을 이유로 신분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때에는 조합원 신분을 보장하고, 조합원 또는 그 가족을 구제 한다. 다만, 그 대상,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에서 정한다.

제13조(징계) ① 조합원이 조합 및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징계를 할 때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포상) ① 본 조합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조합원이나 외부인사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포상을 할 때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후원조합원) ① 예천군 공무원 중 「예천군공무원노동조합규약」 제7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후원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예천군공무원노동조합규약」 제44조 제2항 규정을 적용하여 회비를 납부 할 수 있다.

② 법적 한도 내에서 예천군 공무원 노동조합원과 동등한 대우와 보호를 받는다. 단, 후원조합원은 조합의 의사결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16조(임원)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위 원 장 : 1인
2. 수석부위원장 : 1인
3. 부위원장 : 2인 이내
4. 사무총장 : 1인

제17조(임원의 업무와 권한)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 가. 조합을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 나. 총회,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 다. 공문의 서명인이 되며, 각종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 라. 단체교섭의 대표자가 되며,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 마. 규약의 해석권을 가지며, 이는 총회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 바. 운영위원 및 부설기관의 장 등을 임면한다.
2. 수석부위원장 및 부위원장
 - 가. 수석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 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수석부위원장 또는 사무총장 유고시 직무대리순서는 연장자 우선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사무총장
 - 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일상 업무를 집행하고, 사무총국의 제반업무를 관리한다.
 - 나. 조합의 예산을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 운영한다.
 - 다. 총회에서 제반 활동과 결산을 보고한다.
 - 라. 사무총국 구성원의 임면을 위원장에게 제청한다.
 - 마.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8조(임원의 선출) ①본 조합의 위원장은 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위원장은 전 조합원 과반수이상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이상 및 최다특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1차 투표에서 입후보자중 투표자의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다 득표자와 차점 득표자를 결선 투표하여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단독 입후보 한 경우 찬반투표 당선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임원의 임기)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20조(임원의 불신임) 임원이 직무수행에 있어서 규약을 위반한 때에는 대의원 1/3이상의 발의로 대의원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다.

①임원이 직무수행에 있어서 규약을 위반한 때는 대의원 1/3이상의 발의로 대의원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의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그 즉시 해당임원의 직무는 정지된다.

②대의원회의의 의결이 결정된 후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총회에서 불신임 여부를 확정한다. 총회에서 의결될 경우 그 효력은 확정되며 부결될 때에는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③다만, 30일 이내에 총회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4장 기구 및 조직

제21조(기구) 조합은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총회
2. 대의원회
3. 운영위원회
4. 사무총국
5. 선거관리위원회
6.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7. 회계감사위원회
8. 인권조사위원회

제1절 총 회

- 제22조(구성)** ①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단,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총회기능의 전반사항을 대의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 ②조합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제23조(소집)** ①조합은 매년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년도 종료 전·후 40일 이내에,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대의원대회의 의결로 요구한 때
 3.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요구한 때
- ③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와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의할 사항 등을 명기하여 정기총회는 7일 전, 임시총회는 5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④총회의 공고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 ⑤소집 공고된 내용의 변경은 개최일로부터 3일 전에 변경공고 하여야 하고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4조(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다만, 제2호,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탄핵)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심의·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5. 합병, 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6.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조합비 및 기금에 관한 사항
 8.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조합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5조(의사록) 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한 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한 조합원
3. 의결사항
4. 기타사항(의상의 경과, 요령 및 발언자의 발언요지 등)

②필요한 경우 본 규약에 의한 각 위원회의 의사록 작성에 관한 사항은 본 조항을 준용한다.

제2절 대의원회

제26조(구성) ①본 조합은 총회에 갈음하여 대의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당연직 의장이 된다.

②대의원의 배정비율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 등 군청의 각 부서 및 읍·면·사업소(이하 “각 부서”로 한다)별 1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단, 보건소는 보건소 본청 1명, 지소 대표 1명, 진료소 대표 1명을 각각 두고, 1개 사업소에 2개 과가 있는 경우 각 과별로 대의원을 두며, 부서별 조합원이 5인 이하 부서는 제외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대의원은 각 부서에서 선출 후 조합에 통보한다.

④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대의원이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인사발령 등 유고 시에는 10일 이내에 대의원을 선출해 조합에 통보해야 한다.

제27조(소집) ①대의원회는 정기대의원회의와 임시대의원회의로 구분 소집한다.

②정기대의원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씩 위원장이 소집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③대의원회의의 소집 공고는 일시, 장소, 회의안건 등을 명시하여 회의개최일 7일 이전까지 위원장이 공고하며, 소집 공고된 내용의 변경은 3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임시대의원회의의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부의 할 사항을 명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및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할 수 있으며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임시대의원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임시대의원회의의 소집 요구에 위원장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7일이 경과한 날 소집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3일후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한다.

제28조(기능)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대행사항
2. 총회의 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3. 각종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 예비심사 및 자산과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5. 부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장의 임명동의에 관한 사항
6. 회계감사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임명 동의에 관한 사항
7. 임원의 불신임 및 재임명에 관한 사항
8. 조합원의 징계(제명, 정직, 경고) 재심에 관한 사항
9. 추경예산 승인에 관한 사항
10. 국내,외 단체 등 필요한 단체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11. 기타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조합운영에 관한 사항

제3절 운영위원회

- 제29조(구성)**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당연직 의장이 되고,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 각 국장으로 구성하고,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각 국의 부장까지 포함 할 수 있다.
- ②위원장은 1인의 수석부위원장과 2인 이내의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대의원회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 ③위원장은 직렬별 대표위원을 임명하고 운영위원회에 포함할 수 있다.
- ④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30조(소집)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정기 운영위원회 : 월 1회
2. 임시 운영위원회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

제31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총회 및 대의원회의 수임 사항
2. 기관장과의 협의 및 교섭내용에 관한 사항

3. 규약 및 규정 해석에 관한 사항
4. 총회, 대의원회 준비에 관한 사항
5. 탈퇴한 조합원의 재가입에 관한 사항
6.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항
7. 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
8. 회비징수,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 조합원의 복지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0. 조합원의 표창 및 징계의 제청에 관한 사항
11. 상근직원 채용 및 임금 확정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조합운영에 관한 일상적인 사무에 관한 사항

제4절 사무총국

제32조(구성) ①위원장은 조합의 제반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속으로 사무총국을 두고, 사무총국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을 두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조합운영을 위해 사무총장 아래에는 기획전략국, 총무재정국, 복지후생국, 교육홍보국, 문화체육국, 대외협력국 등을 두며, 국장의 사무를 보좌하기 위해 부장과 부원을 둘 수 있다.

③사무총국의 운영 및 각 부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근직원을 둘 수 있다.

④기타 사무총국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제33조(사무총장의 직무) 사무총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사무총국의 제반업무를 관장하며, 사무총국 구성원의 임면을 위원장에게 제청한다.

제34조(전임자등의 배치) 사무총국에 두는 전임자와 상근직원의 배치기준, 임면, 보수와 고용조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5조(사무총국의 기능) 사무총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집행한다.

1. 각 국에 분장된 사무에 관한 총괄 집행
2. 총회,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의 수임사항 집행
3. 각종 회의 부의 안건 및 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

- 4. 조합원 관리에 관한 확인
- 5. 기타 집행업무에 관한 사항 등

(신설)제35조의1(비상대책위원회) ①입후보자의 부재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지도부 부재 시 대의원회의 의결로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대의원회에서 운영위원중에 호선한다.

③비상대책위원회 운영 기간내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조합 위원장과 동등한 지위와 권한을 행사한다.

④비상대책위원회는 규약상 운영위원회의 권한을 갖는다.

⑤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차기 노동조합 위원장이 선출될 시 비상대책위원회는 당연 해산한다.

제5절 회계감사위원회

제36조(구성 및 기능) ①회계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는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감사위원회에는 연 1회 이상 회계 및 조합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③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총회 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에 보고하였을 때는 전체조합원에게 공개한 것으로 본다.

④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절 선거관리위원회

제37조(구성 및 기능) ①선거관리위원회는 필요 시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규약 및 규정의 해석권을 가지며,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중재 등 선거 사무과 관련된 일체 사항을 관장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7절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제38조(구성 및 기능) ①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조합의 국장 3인과 대의원 중 3명이 희생자구제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장은 조합의 수석부위원장이 한다.

②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희생자구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③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및 희생자구제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8절 인권조사위원회

제39조(설치) 회원이 상사로부터 부당한 압력이나 묵시적 강요에 의한 신분상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권조사위원회를 둔다.

제40조(구성 및 기능) ①인권조사위원장은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하며, 인권조사위원은 인권조사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4인 이내의 위원을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인권조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여 기관장에게 시정, 문책을 요구하거나 사법기관에 고발의뢰 할 수 있다.

1. 징계처리에 있어 공정하고 형평에 어긋난 양정 기준
2. 상사로부터 부당한 압력이나 강요에 의한 업무처리 사항
3. 직장 내의 여성[남성]에 대한 의도적인 신체접촉, 성희롱(언어), 성추행, 인신모독적인 사항
4. 상사로부터 폭언, 폭행
5. 기타 인권조사위원회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절 자문단

제41조(역할) ①위원장은 조합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천군 소속 공무원, 퇴직공직자 또는 외부전문가로 자문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조합 현안사항에 관한 홍보 및 협조체계 강화 등 연대를 위하여 단체,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지원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4장 회 의

제42조(성립 및 의결) ①조합의 각종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다음 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참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규약의 변경
2. 임원의 해임
3.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

③제2항에 관한 사항은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며, 전자투표로도 할 수 있다.

제5장 재 정

제43조(재정운영의 원칙) 조합의 재무 및 회계의 기준을 확립하여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회계규정을 둔다.

제44조(재원) ①조합의 재정은 조합원이 납부하는 의무금과 기타 수익금(후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의무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조합비 : 가입한 달로부터 매월 **기본금의 0.7% (단, 상한은 30,000원으로 하고 하한은 15,000원으로 한다)**
2. 기금 : 총회에서 의결된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3. 특별부과금 :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부담하는 금액

③조합원은 매월 조합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조합비 납부일은 매 급여일로 하며, 원천징수 및 자동이체로 징수할 수 있다.

제45조(회계) ①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조합의 건전재정과 합리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회계규정을 둔다.

③위원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 등 회계의 일체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회계보고서를 감사의견을 첨부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④공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전자문서로 공고할 수 있다.

제46조(상조기능) 조합원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조합원 경조사 시 상조금을 지급할

수 있고 적용범위 및 지급금액은 별도 규정으로 한다.

제6장 단체교섭

- 제47조(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 ①위원장은 모든 교섭 및 협약체결의 대표자가 된다.
- ②교섭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지명한 10인 이내로 한다.
- ③위원장은 단체협약 체결 후 대의위원회에 보고한 후 전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7장 조정신청

- 제48조(조정신청)** 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8장 해산 및 청산

- 제49조(사유)** 조합은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1.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2. 규약에 의하여 해산결의를 한 경우
3. 모든 조합원이 탈퇴한 경우

- 제50조(절차)** 조합의 해산은 전 조합원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실시하되, 재적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1조(청산)** 조합의 해산이 결의되었을 때는 해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산한다.

- 제52조(잔여재산의 귀속)**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은 대의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 제53조(통상관례)** 규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천군공무원직장협회의 승계) ①규약 시행 전 예천군공무원직장협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조합에서 결정한 것으로 보며 별도의 의결이 없는 한 유효하다.

②예천군공무원직장협회의 업무와 자산 등 일체를 승계하며 제반 권리, 의무를 가진다.

제3조(조합가입의 효력)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규약 시행 이전에 조합설립을 예정하고 조합 가입원을 조합 설립 이전에 제출한 자는 이 규약에 의하여 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4조(조합의 승인) 본 규약에 의한 각 위원회의 승인을 조합의 승인으로 본다.

부 칙(2019.04.02.)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예천군공무원노동조합 가입(탈퇴)신청서

소 속		휴대폰	
직 급			
성 명		성 별	남·여

위 본인은 예천군공무원노동조합 규약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탈퇴)할 것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귀하

원천징수 동의서

구분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원천징수 동의사항	구분	공무원노동조합	정률(0.7%) 상한 30,000원 하한 15,000원	기간:계속	회비	

본인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8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상기 내역이 매월 본인의 보수에서 원천징수되는 것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 (인)은 자필 서명으로 한다.

지출원 귀하

※ ○○○은「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지출원이 소속된 기관을 말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예천군공무원노동조합 **후원회원** 가입(탈퇴)신청서

소 속		휴대폰	
직 급			
성 명		성 별	남·여

위 본인은 예천군공무원노동조합 규약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탈퇴)할 것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귀하

원천징수 동의서

구분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원천징수 동의사항	구분	공무원노동조합	정률(0.7%) 상한 30,000원 하한 15,000원	기간:계속	회비

본인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8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상기 내역이 매월 본인의 보수에서 원천징수되는 것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 (인)은 자필 서명으로 한다.

지출원 귀하

※ ○○○은「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지출원이 소속된 기관을 말한다.

대의원 선출결과 통보서

소 속 :

대의원 선출자	인 (서명)				
조합원 확인	성 명	서 명	성 명	서 명	

상기와 같이 예천군공무원노동조합 규약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부서 대의원으로(정히) 선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예천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귀하